

# 체육위원회 규정

제정 1994. 7. 25  
2차 개정 2019. 06. 25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체육위원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함) 각 운동부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선수의 관리, 경기력 향상 및 국내의 경기를 통하여 본교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4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**학생행복처장, 기획평가처장**, 체육부장을 포함한 총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5.11.1., 2019.06.25)

②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체육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
2. 각 운동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3. 체육행사 및 대회출전 계획에 관한 사항
4. 각 운동부의 부장, 감독 및 코치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5. 선수선발, 충원계획, 훈련, 장학제도 등에 관한 사항
6. 체육특기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7. 기타 체육관련 업무

**제5조 (위원장)**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**학생행복처장**이 된다. (개정 2016.06.25)

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**제6조(간사)** 간사는 **학생행복팀** 직원 중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7조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5.11.1)

**제8조(회의)** ① 이 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05.11.1)

**제9조(회의록작성 및 보고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세부사항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(기획예산과-1219, 2005.11.1)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